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362 제출연월일: 2024. 9. 2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중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월금을 뺀 금액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지방채의 원리금 외에도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된 금액 등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종전에는 다른 회계로부터만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날까지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에 따른 지방채의 원리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 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및 「지방재정법」 제5 0조에 따른 이월금을 뺀 금액[이하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 1.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원리금
 - 2.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 3.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채무의 합계액(「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과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이자는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결산액의 합계액으로 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2항 각 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 상환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 세의 결산액
- 2.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결산액
- 3.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 세의 결산액
- 4.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결산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1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적립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
-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적립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한 때부터 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3.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적립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전이라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기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9조 전단 중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을 "다른 회계 또는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 정안정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로 한다.

제46조 중 "재무관"을 "재무관·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이나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의 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1. 회계관계공무원
-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지역통 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지방의회 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날까 지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19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용계획) ①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 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재정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원리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 다. 이 경우 세입·세출 예산 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 ②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 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할 수 있다. (剩餘金) 중 다른 법률에 따라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및 「지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 따른 이월금 월금을 뺀 금액[이하 "세계잉 여금"(歲計剩餘金)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채무 상환에 사 용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원리금

- 2.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 3.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채무의 합계액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 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과 「지 방재정법 | 제11조에 따른 지 방채의 이자는 제외한다)을 다 음 각 호의 결산액의 합계액으 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10 이 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지방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 금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을 제2항 각 호의 채무 상환 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 무 상환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운영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세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의 결산액
- 2.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행

 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결

 산액
- 3.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교

 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결산액
- 4.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재 정법」 제29조에 따른 시· 군 조정교부금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 정교부금의 결산액
- ④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

 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

 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 금을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 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110 이상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지방자 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의 일 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 을 제외한 금액에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일반회계 세 계잉여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 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 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적립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 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

-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적립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 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한 때부터 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 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 여야 한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3.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적립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 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 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 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u>다른</u>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轉用) 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 (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 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u>재무관</u>· 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 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

한 경우에만 직전 회계연도 세
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해
당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힐
<u>수 있다.</u>
⑩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제14
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결
산 승인을 요청하기 전까지 직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
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시
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
다른
<u>다른</u>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인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인 정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인정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인정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인 정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인 정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인 정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인 정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 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 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지 특례)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 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 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 7 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 | 할 수 없다. 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1. 회계관계공무원

<u>.</u>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계공무
원의 임명은 지방자치던	<u></u> 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지	<u> </u>
체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	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 등으	<u> 기</u> 재
정보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

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 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

<u>수 없다.</u>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u>나목에 해당하는 사람</u>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
	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
	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

[별지 제1호서식]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4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5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항	회계관계공무원에 통합지출관을 추가(제46조)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조자에 대해서도 재정보증을 가입(제50조제1항) 토록 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4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5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조제1항은 "지방회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포함)을 별표1(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같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지방회계법」제50조제1항은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나목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포함)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는 통상적으로 통합지출관과 회계사무 보조자^{*}를 재정보증 대상에 旣 포함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 현황: '19년 기준 서울 14,000명, 대구 283명, 광주 613명, 대전 691명, 울산 172명 등 보조자 재정보증 가입

○ 따라서,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회계사무 보조자의 재정보험 가입이 누락된 일부 자치 단체는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별 회계사무 보조자 수는 변동가능성이 높고 재정보증 체계(보험료 등)도 상이하여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O 해당사항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문소영	서상우	송경주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소영	044-205-3776	moona21@korea.kr